

◎기상청공고 제2022-169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상청이 점검해야 할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 재검토 기한 만료 전 기준일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점검내용 수수료 부과기준 준수여부(안 제3조제1항)
- 나. 검정대행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조항 삭제(현행 제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